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쟁송 제기 시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근거 명시 등>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32호)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82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Ⅰ. 개 요 ····· 1

【한민수의원안】 ····· 1

【이인영의원안】 ····· 3

Ⅱ. 검토의견 ····· 5

1. 행정쟁송 제기 시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근거 명시(한민수의원안·이인영의원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 5

2.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결과 공개 근거 마련(이인영의원안 제14조의14) ····· 16

3. 재산등록 거부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이인영의원안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 ····· 23

Ⅰ. 개　　요

【한민수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1. 4.

다. 회부연월일 : 2024. 11.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년여의 쟁송절차 진행 중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다 최종 판결 이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행정적·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하락하여 이를 법률로써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이인영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인영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1. 29.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

2.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및 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자가 그 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관련 직

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11제5호 신설).

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14제3항 등).

다.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Ⅱ. 검토의견

1. 행정쟁송 제기 시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근거 명시(한민수의원안·이인영의원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송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행정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한민수의원안·이인영의원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현 행	한민수의원안·이인영의원안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현 행	한민수의원안·이인영의원안
	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행정쟁송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4조의11은[1] 공개대상자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이하 “이해충돌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해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3.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
   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
   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②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에 관한 사항은 크게 1)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제14조의11제1항제1호),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제14조의11제1항제2호), 3)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제14조의11제1항제3호), 4)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지연한 경우)(제14조의11제1항제4호) 등 4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그 시기와 종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는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로, 현행법 제14조의5[2]는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밖에 심사 청구의 요건, 절차,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현황 >

(단위: 건)

구 분	심사건수	심사 결과		
		관련있음	관련없음	각하·철회 등
2023년	809	185	549	75
2022년	713	126	419	168
2021년	813	117	633	63
2020년	594	98	435	61
2019년	332	61	242	29

자료: 인사혁신처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어서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 관여가 금지되는 시기와 종기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 관여가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 관여가 금지되는 기간의 종기를 모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3] 현행법에 따라서도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행정쟁송 제기 여부에 상관 없이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 보임.

---

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이해충돌 직무 관여가 금지되는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①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제14조의11제1항제2호), ②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제14조의11제1항제3호), ③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제14조의11제1항제4호다목), ④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제14조의11제1항제4호라목)로 규정하고 있음.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4조의11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동 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때, 동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통보가 있지 않는 한 쟁송기간 중에도 동 법률 규정에 따라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 관여가 계속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현행법 규정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행정상 절차에 한정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동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게 될 수 있는 바, 규제의 공백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다툼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일정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당사자에 대해 불이익한 금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볼 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통보를 받은 공직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행정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동 위원

회의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통보를 받은 날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은 입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만을 특정하여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도 「행정기본법」 제36조[4]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동법 제37조[5]에 따른 재심사와 같은 불복

---

4)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6] 현행법 제14조의12[7]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직권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쟁송 제도 외의 불복 절차나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봄.[8]

---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6)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음.

7)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날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은 그 입법 실익 등 타당성이 인정되나, 직위변경 후 또는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 이행기간을 도과하여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무부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법률 규정을 두는 것은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한하여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그 외의 불복 절차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재심사의 경우에는 직무 관여 금지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법률로 법원 등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직접 제한하게 되어 현행 집행정지 제도와 상충될 소지가 있고,

행정쟁송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직자로 하여금 소 제기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공직 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 여부가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하도록 사실상 압박을 가하여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결과 공개 근거 마련

(이인영의원안 제14조의14)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4).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신탁 사실 및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의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린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해당 심사의 청구내용과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나. 검토의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는 공개대상자등(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임.[9)]

---

9)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10]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되며, 동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음.

현재 법 제20조의2[11]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통해 주식 직무관련성 심

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함.

11) 「공직자윤리법」

사 청구 및 결과에 관한 통계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나,[12]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나 심사 결과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및 심사 결과의 내용 등 그 운영에 관한 실체적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13]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의 내용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등록재산의 공개 제도, 주식거래 신고내용의 비공개 원칙 등 현행 법률 규정과의 관계에서 상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 심사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우선,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법 제10조에 따른 재산 공개대상자 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해당연도에 이루어진 심사청구의 건수,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건수, 직무관련성 불인정 건수, 각하 및 철회 건수 등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13)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와 심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공개의 방식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재산 공개대상자가 아닌 이들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식보유 현황이 공개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공개대상자의 주식거래 신고내용을 공개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14] 이는 재산 공개대상자로 하여금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되 주식 거래의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법 제6조의2제3항[15]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아울러,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의 내용 및 결과를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심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시로 이를 공개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쳐 시장 질서를 왜곡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의

---

14)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식 거래를 통해 보유 주식의 총가액이 변동함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에 있어 그 심사 청구 사항과 심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주식 거래의 내역이 사실상 공개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15)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u>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내용 및 심사 결과 공개의 공익적 기대효과와 등록재산의 공개 제도 등 현행 법률 규정과의 체계정합성,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공개 제도의 도입 여부,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 등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16]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은 재산 내역과 관련하여 재산 공개대상자의 최초·정기 재산 현황만을 공개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이나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주식 거래내역 신고 내용의 비공개, 심사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및 비밀엄수 규정 등에 따라 공개하고 있지 않고,[17] 특히 법 제6조의2에서는 주식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 침해, 증권시장의 교란 등이 우려되는 점, 동법 시행

---

16)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바(1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878, 2024.10월 현재 항소심 진행 중), 동 사안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7)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령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20년 법 개정으로 연차보고서를 통해 매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결과에 관한 통계가 공개되고 있는 점, 공개대상자의 범죄수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및 결정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동법 시행령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재산등록 거부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이인영의원안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산등록 거부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3년----------3천만원----------.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3년----------3천만원----------.

나. 검토의견

법정형은 일정한 범죄구성요건에 대응하여 벌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로서, 각 범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형사제재로서 입법자가 개별 구성요건의 전형적인 불법성을 일반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형의 종류와 범위를 말함.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라고 판시하면서도,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18)]

개정안과 같이 재산등록 거부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재 조치의 규범력이 강화됨으로써 공직자의 해당 의무 이행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제하여 동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18) 헌법재판소 2012.7.26. 2012헌바144 결정

으로 보임.

다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형벌 규정은 다양한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그 행위의 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다른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 또는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하는 행위의 전반적인 불법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예방적 효과를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 등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공직자윤리법」상 형벌 규정 현황>

구 분	유 형	내 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누설	•금융거래의 내용 자료를 누설 등 목적 외 이용(제28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제한	•취업승인 없이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알선(제2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 거부(제24조)
	주식백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제24조의2) •공개대상자 등이 백지신탁한 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 또는 관여, 신탁업자 등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여 정보 제공(제28조의2)
	거짓자료 제출	•공직자윤리위·주식백지신탁위 자료제출요구에 거짓 자료제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거부한 경우(제25조)
	비밀누설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하게 한 경우(제27조)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제28조)

구 분	유 형	내 용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산등록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신고서 미제출(제24조)
	출석거부	•공직자윤리위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제26조)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 거부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법률」[19] 등 공직자에게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다른 법률상의 벌칙 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재산등록 거부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경우 공직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으나, 「공직자윤리법」상 다른 형벌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정

1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①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